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11
----------	------

2020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최영주 의원(찬성자 11명)
- 나. 발의일자 : 2020년 8월 10일
-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 라. 상정결과 :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2020년 9월 3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최영주 의원)

가. 제안이유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을 정하고, 서울시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계가 자
생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학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문화예술후원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정욱)

가. 제정안 개요

- 동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14.7.29. 시행)을 기반으로 서울특별시의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여 문화예술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것임.

나. 제정의 필요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1.5%로 2003년(62.4%) 대비 19.1%p 증가했으며, 서울문화재단의 ‘2018년 서울시민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민은 1년 평균 약 12만원의 문화비를 지출하며, 연평균 6-7회 문화 관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2018년부터 여가시간의 확대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체험활동이 증가하였고 문화향유를 위한 수요도 높아졌기 때문이며, 이에 부응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됨.

- 서울시는 시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분야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각종 시책을 추진하

고 2030년까지 문화분야 예산을 3%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019년 1.7%, 2020년 1.5%로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바, 기업 등 민간의 후원을 유도하여 재원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메세나협회의 ‘2018 연차보고서’ 결과 문화예술 지원금액은 2017년 대비 5.0% 증가했으나 지원기업수와 지원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3.2%,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8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지원기업수	609	497	532	515	△3.2
지원금액	180,523	202,581	194,312	203,954	5.0
지원건수	1,545	1,463	1,415	1,337	△5.6

(2018 연차보고서, 한국메세나협회)

- ‘문화본부 소관 4개 재단의 기업 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서울문화재단에 기부하는 기업이 48개, 기부금 14억원으로 제일 많았으며, 기업과 제휴하는 사업은 세종문화회관이 21개인데 반해 서울디자인재단은 기업과 제휴하는 사업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음.

<문화본부 소관 4개 재단의 기업 기부 현황>

(2019년 기준, 단위 : 개, 천원)

구분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기업수	10	48	13	-
기부금	516,429	1,414,574	488,995	0
제휴사업	21	3	10	-

- 또한 4개 재단의 ‘최근 3년, 재단의 수입에서 기부금 차지 비율’을 살펴보면, 세종문화회관 0.5%, 서울문화재단 2.4%, 시립교향악단 1.4%, 서울디자인재단 0.5%를 차지하며, 이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최근 3년, 문화본부 소관 4개 재단의 수입에서 기부금 차지 비율>

(단위 : 천원)

연도별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2019	516,429(1.0%)	1,414,574(2.7%)	488,995(2.5%)	870(0.0%)
2018	32,400(0.0%)	1,135,600(2.5%)	204,190(1.1%)	250,585(0.5%)
2017	210,000(0.5%)	1,007,291(2.2%)	72,950(0.4%)	576,415(1.1%)
합계	758,829(0.5%)	3,557,465(2.4%)	766,135(1.4%)	827,870(0.5%)

- ‘2018년 문화향유실태조사’에서 서울시민이 문화관련 단체, 지역 문화시설 등 문화관련 영역에 금전 기부를 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97.9%로, 현재 국내의 후원문화는 외국의 문화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문화예술후원 활동에 대한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기업이나 개인의 지출에서도 문화예술분야의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고 다른 분야보다 먼저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며, 문화예술분야의 기부는 다른 영역에 비해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므로, 동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기부하는 시민과 기업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들과 문화예술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시민의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개 타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임.

타·시도명	조례명	제정일
경기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2017.11.13.
인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2020.07.14.
경북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2016.07.11.
전북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2012.07.0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2019.10.10.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1) 조례안의 구조

- 동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경비지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등 총 7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조문체계 현황>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5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제2조	정의	제6조	포상
제3조	시장의 책무	제7조	시행규칙
제4조	경비 지원	부칙	-

(2)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①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과 문화예술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의 활동 권장, ② 문화예술 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하고자 하므로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안 제4조)

- 안 제4조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홍보, 협력체제 구축과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등 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후원매개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안 제6조는 서울시에 등록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로 현재 서울시에 한국메세나협회와 서울문화재단 2개 단체이며, 전국적으로는 광주메세나협의회, 울산메세나운동 추진위원회, 부산메세나진흥원, 경남메세나협회, 충북메세나협의회, 제주메세나협회 등 6개 단체가 인증되어있음.

향후 집행부에서는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등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을 추진하고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문화예술후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라. 종합 의견

-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 정책을 규정하여 문화예술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예술 분야는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문화예술이 지니는 시장실패의 한계점 등으로 인해 재원의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지 못하고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 불황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공공의 지원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기업이나 개인의 후원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분야의 발전 속도는 분명 경제 발전 속도만큼 빠를 것이며,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이에 따른 소비 촉진 등 다양한 경제적 후생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는 등 문화예술계 자생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임.
- 문화본부 소관 4개의 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금을 통해 민간 전문 인력과 안정적 운영을 보장받고 경영상 유연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반해 운영재원의 안전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예술기관들은 그들의 임무와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방법들을 배워야만 한다”¹⁾는 말처럼 서울시 뿐 아니라 각 재단은 추진 중인 후원유치 사업을 재검토하여 당면해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업 후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1) Kotler·Scheff(2014). 김아름, ‘문화예술기관의 기업 후원유치에 관한 연구(2017)’에서 재인용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최영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11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0일

발 의 자 : 최영주 의원(1명)

찬 성 자 : 경만선, 김춘례, 김태호, 노승재
박기재, 안광석, 이은주, 정지권
정진철, 조상호, 최기찬 의원
(11명)

1. 제안이유

「문화예술후원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서울시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문학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
(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후원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후원 문화확산을 위한 시민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은 서울시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4조(경비지원),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에 의해 비용이 발생하나
- 서울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사업(제4조)을 기 추진 중에 있어 금번 조례제정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지원(제5조)에 대한 사항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이 불분명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 곤란

〈동 조례안 관련 서울시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내용〉

조례(안)	기 추진 중인 서울시 사업내용	예산(천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사업 제4조(경비지원)	○ 2020 메세나 지원 및 기부활성화 사업(서울문화재단)	550,000
	○ 2020 메세나 데이 기획·운영(서울디자인재단)	9,857
합계		559,857

- ※ 첨부 1. 2020 서울메세나사업 기본계획
- 첨부 2. 2020 기업 메세나 사업계획(안)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제1항제2호)
 -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분석관(주무관) 양훈

☎ 02-2180-7934

e-mail : huny101@seoul.go.kr